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연월일 : 2011. 11.18

제출자 : 박종욱 의원 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1년 12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의원 및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활동기간

- 2011년 12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장문혁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을 의원, 정문섭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1. 12.20 (화)	제1차 조례특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9.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6.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1. 평창군 분노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